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정준호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2713호
- 다. 발의일자 : 2025년 5월 23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2. 제 안 이 유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질병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에 필요한 시책 수립, 경비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질병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 제25조¹⁾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입양,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자치구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2021년 개정(제25조제3항 신설)을 통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서울시는 2022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사업’²⁾을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사업’³⁾으로 취약계층의 동물

1)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와 입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등록, 반려동물의 교육·홍보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봉사동물로서 은퇴한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추진('22년도~'24년도)

- 사업예산 : ('24) 5억원, ('23) 3억원, ('22) 3억원
- 지정병원 : ('24) 113개소, ('23) 92개소, ('22) 68개소
- 지원실적 : ('24) 2,539마리 ('23) 1,864마리, ('22) 1,388마리

3)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사업('22년도~'24년도)

- 사업예산 : ('24) 4천6백만원, ('23) 1억 2천만원, ('22) 6천7백만원
- 지정펫위탁소 : ('24) 18개소, ('23) 26개소, ('22) 9개소
- 지원실적 : ('24) 134마리 ('23) 215마리, ('22) 54마리

위탁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음.

- 안 제25조의2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정책에 선명성을 더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세부적으로 지원 명칭을 법령에 규정된 ‘돌봄’⁴⁾으로 명명(제1항)하고 지원 대상에 ‘진료비’, ‘위탁보호비’ 등을 명시(제2항)하였으며,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제3항)하고 있음.

또한, 경비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대상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반려동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지원(제4항)하도록 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우선 지원(제5항)하고 적극 홍보(제6항)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 없음.

4) 「아이돌봄 지원법」,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3.2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3.27.)